

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문화체육과)

의안번호	제238호
제 출 자	양순임 의원 외 17명(2023. 11. 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‘마을서점’이라는 명칭을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상의 명칭인 ‘지역서점’으로 개정하여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,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 또한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
- 나.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칭 변경함(안 제2조 ~ 제12조)
- 다.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
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)
- 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
(안 제9조제1항, 안 제9조제3항, 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11. 7. ~ 2023. 11. 13.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마을서점’이라는 명칭을 「출판문화산업진흥법」 제7조의2¹⁾에 따라 ‘지역서점’으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,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

1) 제7조의2(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(이하 “지역서점”이라 한다)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(「도서관법」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)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7.>

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8. 10.]

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
-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‘마을서점’을 ‘지역서점’으로 명칭 변경함.
-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9조제1항, 안 제9조제3항, 안 제12조는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뜯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,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을 규정한 법 제7조의2(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)가 2021년 8월 10일 신설됨에 따라 ‘마을서점’ 명칭을 ‘지역서점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